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747
----------	-------

발의연월일 : 2026. 2. 11.

발 의 자 : 서영석 · 이해식 · 윤준병
박홍배 · 한정애 · 소병훈
허종식 · 김태년 · 노종면
이수진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복지사 등은 가사·여가·휴식 등을 위하여 업무를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사 등은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마음놓고 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휴직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67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26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를 각각 제3조의3부터 제3조의6까지로 하고,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권 보장 및 대체인력의 확보·지원) ①

사회복지사 등이 가사·여가·휴식 등을 위하여 업무를 쉴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휴가·휴직·교육·훈련·질병·산업재해 등에 따른 일시적 결원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별 특성 및 지역별 복지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종업무의 사회복지사 등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26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신 설></u>	법률 제21260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u>제3조의2(사회복지사 등의 휴식 권 보장 및 대체인력의 확보· 지원) ① 사회복지사 등이 가 사·여가·휴식 등을 위하여 업무를 쉴 수 있는 권리는 보 장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휴 가·휴직·교육·훈련·질병· 산업재해 등에 따른 일시적 결 원으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발 생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을 대 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대체인력을 지원하 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서비스별 특성 및 지역별 복지서비스 수 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제3조의2</u> ~ <u>제3조의5</u> (생략)	<u>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체인력으로 배치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는 동종업무의 사회복지사 등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제3조의3</u> ~ <u>제3조의6</u> (현행 제3조의2부터 제3조의5까지와 같음)
---	---